

# 기업범죄 억제를 위한 제안으로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

이 정 민\*\*

## ◀ 目 次 ▶

- I. 序
- II.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에 대한 이해
- III.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적용
- IV.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나아가야 할 방향

(논문투고일 : 2010.05.25. / 논문심사일 : 2010.6.7. / 게재확정일 2010.06.18.)

## I. 序

기업범죄<sup>1)</sup>를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기업 관련법들에서 양벌규정을 두고

\* 이 글은 제2회 범질서글로벌컨퍼런스(2009.6.24)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글을 토대로 수정·보완한 것임.

\*\* 단국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전임강사

1) 기업범죄는 기업과 기업의 소속원, 즉 기업 또는 기업의 대표자, 사용자 또는 사용인의 대리인 기타 종업원이 그 기업의 업무와 관련해서 범하는 범죄로서, 종업원범죄, 경영진범죄, 기업조직체 범죄로 세분화할 수 있다. 종업원 범죄는 경영진을 제외한 종업원이 자신의 지위나 사업활동을 이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범한 범죄를 말하고, 경영진 범죄는 기업조직체의 경영진이 자신의 지위나 사업활동을 이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범하는 범죄를 말하고, 기업조직체 범죄는 기업의 조

있다. 양벌규정은 실제 위법행위를 저지른 종업원을 처벌하는 외에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sup>2)</sup>이나 개인 영업주를 함께 처벌하는 규정<sup>3)</sup>이다. 양벌규정의 목적은 대개 행정의무의 이행보장 등 입법정책상의 필요성에 의하여 인정된 것<sup>4)</sup>이나, 직접 규율하지 않고 부수적인 입법형식을 취하므로 그 성립범위가 정확하지 않고<sup>5)</sup> 책임에 비례하여 형벌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양벌규정에 대한 정비는 끊임없이 요구되었고,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2007년 11월 29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에 대한 양벌규정에 대한 위헌결정(2005헌가10)을 내렸다. 그 내용은 “종업원의 업무관련 무면허의료행위가 있으면, 이에 대해 영업주가 비난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영업주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문언상 명백한 의미와 달리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영업주의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추가하여 해석하는 것은 문리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결국 위 법률조항은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그 책임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라는 책임주의에 반한다. 또한 별개의 의견으로 일정한 범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법률조항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범죄에 대한 귀

---

직체가 범죄의 중심이 되는 것으로 조직체의 구성원이 기업의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기업조직체의 이익을 위하여 범한 범죄이다. 유병규, 『기업범죄 수사의 효율성 제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49면 참조.

- 2) 법인의 범죄능력에 관해 논의가 있으나 여기서는 언급을 생략하고, 자שה게는 양천수, “법인의 범죄능력,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2호, 2007/여름호, 161~187면 참조.
- 3) 1999. 7.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도 이를 알 수 있다. 구 건축법 제 54조 내지 56조의 벌칙규정에서 그 적용대상자를 건축주,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등 일정한 업무주로 한정할 경우에 있어서, 같은 법 제57조 양벌규정은 업무주가 아니면 당해 업무를 실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위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 4) 박미숙·탁희성·임정호, “양벌규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8년도 대검찰청 용역과제 연구보고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115면 참조.
- 5) 이에 대해 자세하게 박기석, “판례와 사례분석을 통한 기업범죄 처벌의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학회 춘계학술회의, 2008.5.17. 발표문 참조.

책사유를 의미하는 책임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법정형 또한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도록 규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문언상 종업원의 범죄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영업주에 대해서도 그 처벌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사 위 법률조항을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 있는 영업주만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더라도, 과실밖에 없는 영업주를 고의의 본범인 종업원과 동일하게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의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그 책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이 두 가지 점을 모두 고려하여 형법상 책임원칙에 반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현재의 판례에 이어 2008년 12월 양벌규정에 대한 개정법률이 73건<sup>6)</sup> 통과 되었다. 그 중 하나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 
- 6) 자적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 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화전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격및사격장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향교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산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

관한 법률을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개정 전 제19조 (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후 제19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는 2005헌가 10의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법인 등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여 형사법의 기본원칙인 책임주의에 부합하도록 양벌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법인 등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형사 재판과정에서 사실상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입법동향은 신설조항에서도 드러나는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9년) 제448조<sup>8)</sup>나 상법 제634조의 3<sup>9)</sup>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알

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개발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7) 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수 있다.

다시 말해, 과거 법인은 범죄행위에 실질적으로 가담하였거나 지시 또는 도움을 주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종업원의 행위를 지도하고 감독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와 전혀 관계없이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되었으나, 이제는 단서조항에 따라 법인의 책임에 상응하여 처벌할 수 있고, 이는 책임주의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단서에서 제시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이 무엇인지가 애매 모호하다는 것이다. 범위반행위가 발생했을 때 법인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아직 법은 말해 주고 있지 않고 있다. 이는 형법상의 기본원칙인 명확성 원칙의 문제를 낳을 수 있다. 그에 대한 대답을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에서 찾을 수 있다.<sup>10)</sup>

한편 어떠한 규제가 효율적이려면 수범자가 그 규제를 잘 알고 그 규제를 잘 지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수범자인 기업인들이 법에 대한 모호성을 호소<sup>11)</sup>하고 있으며,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sup>12)</sup> 과도한 규제, 즉 과잉규제는 규제상황이나 규제대상에 대한 규제자의 불충분한 지식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바로 이러한 과잉규제를 막고 적절한 규제를 가능하게 해 준다. 왜냐하면 행위자가 스스로 지켜야 할 규범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는 그 법에

- 8)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3조부터 제44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9) 회사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624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회사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0) 동지의 견해로 김재봉, “양벌규정과 기업처벌의 근거·구조”, 『법학논총』 제24집 제3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14면 참조.
- 11) 이러한 이유의 하나로 법률의 입법과정에 많은 단체의 압력이 작용하고 그 결과 목적이 희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浜辺陽一郎, 『コンプライアンスの考え方』, 中央公論新社, 2005, 5면 참조.
- 12) 대한상의, “2007 기업관련 처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조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5차 회의자료 참조.

대해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모호성 문제나 과잉규제 문제는 사라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II.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에 대한 이해

### 1.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의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기업비리나 범죄에 대해 법과 같은 규제가 예방 등의 적극적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사건이 발생한 후, 그 결과가 이미 큰 피해와 파장을 일으킨 후에야 비로소 작동하는 한계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되었다.<sup>13)</sup> 하인리히 법칙<sup>14)</sup>을 예로 들어보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것은 1번의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미 그 전에 유사한 29번의 경미한 사고가 있었고, 그 주변에서는 300번의 이상 징후가 감지되었다는 것이다. 즉 현재 화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는 관계자가 문제로 인식하고 있을 케이스가 있다는 것이다. 즉 우연히 외부로부터 자극이나 지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고나 범죄로 연결되지 않았지만, 문제로서는 인식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던 문제가 생각보다 많으며, 기업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스스로 인식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회사에서 자기 통제(self-regulation)을 통해 회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를 방지하고(prevent), 그것이 범죄화 되기 전에 위반행위를 감시하고(monitor), 감지하고(detect) 보고하는(report) 프로그램이다. 흔히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줄여 CP라고 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이란 법률 및 규정

13) 준법감시제도의 예방적 효과에 관해서는 자세하게 이진국, “기업범죄의 예방수단으로서 준법감시제도(Compliance)의 형법적 함의”, 『형사정책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72-76면 참조.

14) 1930년대 초 미국 한 보험회사의 관리, 감독자였던 H.W. 하인리히는 고객 상담을 통해 사고를 분석해 ‘1대 29대 300’의 법칙을 발견했다. 정병진, 한국일보 2006.03.19 [지평선] “하인리히 법칙” 참조; 김민주, 『하인리히 법칙』, 토네이도, 2008 참조.

에 대한 준수(compliance)에 관해, 회사 내부 절차나 시스템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법준수와 관련한 상세한 업무절차 규정의 제정, 내부윤리강령의 제정,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구체적 감시·통제활동 및 정기·비정기 교육실시 등 회사 및 임직원의 업무에 있어 규범과 법규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sup>15)</sup>

컴플라이언스(compliance)를 번역하면, 법령준수 또는 준법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법령준수프로그램, 자율준수프로그램,<sup>16)</sup> 준법감시프로그램, 준법감시시스템, 준법감시제도<sup>17)</sup> 등으로 칭하고 있다. 컴플라이언스(compliance)의 의미를 재해석하는 학자는 compliance의 동사형인 ‘comply’를 ‘complete’와 ‘supply’의 합성어로 해석하여, “완전한 것을 제공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즉 기업이 ‘사회에 유익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은 적정하고도 건전한 형태일 때 비로소 사업으로서 완전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해석하면서 이것이 바로 컴플라이언스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한다.<sup>18)</sup> 이러한 의미에서인지 미국에서도 그 준수 대상을 법뿐만 아니라 기업윤리<sup>19)</sup> 등을 포함한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법률에 한하여 컴플라이언스를 운영하는 회사는 6%에 지나지 않고,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인 86%가 법령과 윤리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sup>20)</sup> 한편 컴플라이언스(compliance)는 요구와 기대에 부응한다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주주는 물론, 소비자, 고객, 거래처, 투자가, 종업원, 지역사회, 정부 등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sup>21)</sup> 따라서 컴플라이언스 프

15) 이정숙,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구축—미국 증권회사의 예를 기초로”, 『BFL』 제4호, 2004/3, 25~26면 참조.

16) 이정민·신의기, 『법질서 확립을 위한 자율준수 프로그램 활용방안』, 200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참조.

17) 이진국, 앞의 논문, 참조.

18) 浜辺陽一郎, 앞의 책, 6면 참조.

19) 이를 감독하는 담당관을 compliance officer, ethics officer라고 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준수는 단순히 법률준수뿐만 아니라 윤리준수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浜辺陽一郎, 앞의 책, 6면 참조.

20) 나머지 8%는 윤리적 가치관을 포함한 기업풍토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浜辺陽一郎, 앞의 책, 7면 참조.

21) 이렇게 기업윤리 등을 포함하는 컴플라이언스에 대해 비용부담도 크고, 본래 영리를

로그래밍은 최소한의 법규범을 준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업계의 룰, 사회의 상식과 같은 사회규범(social laws, social standards)까지 준수하도록 요구되어지는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sup>22)</sup> 이러한 이유로 오늘날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과도 일맥상통한다.<sup>23)</sup> 이러한 다층적 의미를 살리고자 우리나라나 일본의 경우 원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sup>24)</sup> 한편 컴플라이언스의 확장개념<sup>25)</sup>인 내부통제<sup>26)</sup>시스템<sup>27)</sup>(internal control)<sup>28)</sup>을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과 동의어로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발목을 잡는 요소라는 우려가 등장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의 제품에 문제가 있으면, 그 회사의 제품 전체에 대해 신용이 가지 않고, 그 회사에 대한 평판이나 이미지가 나빠지면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는 현실에서 기업의 입장에서 컴플라이언스에 기업윤리 등은 포함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요소로서 작용하게 되었다.

- 22) 컴플라이언스 대상범위에 대해 자세하게 金融機關コンプライアンス研究會, 『金融機關の法令等遵守態勢』, 2008 참조.
- 23) 大塚和成・瀧川宣信・藤田和久, 『内部統制対応版企業コンプライアンス態勢のすべて』, 金融財政事情研究會, 2007, 4면 참조; CSR과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에 대해 현상으로서, CSR은 유럽에서, 컴플라이언스제도는 미국에서 선행하였다는 점을 차이로 들기도 한다. 浜辺陽一郎, 앞의 책, 101~114면 이하 참조.
- 24) ‘준수’라고 하면 위로부터 주어진 것을 지키는 이미지를 갖게 된다. 하지만 컴플라이언스는 단순히 룰을 강제적으로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컴플라이언스 사상의 배후에는 위에서 주어진 룰을 의미도 모른 채 무비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컴플라이언스는 이미 있는 룰을 준수하는 것에 덧붙여, 어떤 룰을 설정하느냐 어떻게 룰을 운용하느냐도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浜辺陽一郎, 앞의 책, 6면 참조.
- 25) 이에 대해 자세하게 大塚和成・瀧川宣信・藤田和久, 앞의 책, 9~13면 참조.
- 26) COSO(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에 따르면, 내부통제는 통제환경과 위기평가, 통제활동,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감시 등을 포함한다. Anthony Tarantino, *Manager's Guide to Compliance: Sarbanes-Oxley, COSO, ERM, COBIT, IFRS, BASEL II, OMB's A-123, ASX 10, OECD Principles, Turnbull Guidance, Best Practices, and Case Studies*, Wiley, 2005, 21~26면 참조.
- 27) U.S. SOX Section 404: internal control.
- 28) Anne M. Marchetti, *Sarbanes-Oxley Ongoing Compliance Guide: Key Processes and Summary Checklists*, Wiley, 2007, 2면 참조.

## 2. 거시적 관점에서 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사실 법을 지키기 위한 즉 준수를 위한 것이지만, 법의 불완전성<sup>29)</sup>을 보충하기 위해 시작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sup>30)</sup> 이것은 법의 형성과 적용 영역에서의 분석이 가능하다. 먼저 법의 형성에 있어, 법은 규제대상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획일적인 명령과 통제를 사용함으로써 해서 적절한 규제가 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게 된다. 이와 더불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경영환경과는 달리, 법은 그 변화에 따라갈 수 없어 (법적) 판단의 기준을 미리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 보이기도 한다. 둘째 법의 적용에서 보면, 법이 죽어있는 즉 사(死)문화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필요없는 경우<sup>31)</sup>이거나 수범자나 법률관계자의 법에 대한 부지 때문이다. 이런 상황과 더불어 결과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법이 원래 달성하고자 했던 목적과 상반된 결과를 낳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규제의 역설<sup>32)</sup>이라고 한다.

이러한 규제의 역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의 형성측면에서 다양성이 수용되어야 하고, 명령과 통제방식이 아닌 참여자<sup>33)</sup>와의 의사소통<sup>34)</sup> 방식이

29) 입법오류가 발견되는 양벌규정이 존재하는데,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법인 또는 개인 영업주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조문에 벌금형 규정이 없는 경우이다. 이와 같은 오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2조의 2, 문화재보호법 제117조, 공직선거법 제260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4조, 선물거래법 제100조, 식품위생법 제79조, 원자력법 제121조,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38조, 전자금융거래법 제50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1조, 청소년 보호법 제54조에서도 발견된다. 박미숙·탁희성·임정호, 앞의 논문, 50~51면 참조.

30)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역할에 대해 자세하게 이정민, “경영판단원칙과 업무상 배임죄”,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4호, 200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77면 참조.

31) 이러한 예로 상법의 특별배임죄를 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업무상 배임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므로 업무상배임죄 규정에 흡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정민, “회사형법의 합리화와 형법정책의 방향”,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6, 206~207면 참조.

32) 자세하게는 김영평·최병선·신도철 편저, 『규제의 역설』, 삼성경제연구소, 2006 참조.

33) 참여자 역할에 대해 자세하게 양천수, “법 영역에서 바라본 참여자 관점과 관찰자 관점”, 『안암법학』 제23권, 안암법학회, 2006, 94면 참조; 양천수, “형법상 법익개념의 새로운 근거설정 필요성과 가능성”, 『고려법학』 제46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267면 참조.

34) 이상돈, 『형법학』, 법문사, 1999, 46면 이하 참조.

가미된 절차가 형성되어야 한다.<sup>35)</sup> 법의 적용측면에 있어서는 법에 대한 정비와 법정보화<sup>36)</sup>가 이루어져야 한다. 입법과정에서 다양한 견해의 수용과 기업과 정부간의 의사소통, 법의 정비, 법정보화 등의 이 모든 상황을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보완해 줄 수 있다.

실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법을 준수하기 위한 사내 가이드라인으로 시작되었지만, 준수를 잘하면 선처해 주겠다는 국가의 정책과 맞물리면서 국가와 기업의 관점교환<sup>37)</sup>의 장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한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서는 해도 좋은 것(DO)과 해서는 안되는 것(DO NOT)으로 매뉴얼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땅으로 묻혀가는 법을 구체적 예를 들어가며 기업에 맞게 체화시켜 살아있는 법<sup>38)</sup>으로 정보화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국가는 법을 형성하거나 적용<sup>39)</sup>할 때, 컴플라이언스 매뉴얼에 제시된 할 것(DO)과 하지 말아야 할 것(DO NOT)을 고려하여 법을 형성하거나 적용하게 된다.

즉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범형성과 법관철에 있어서 법 다원주의(legal pluralism)<sup>40)</sup> 투영의 단면이라고 볼 수도 있다.

35) 이에 대해 자세하게 이정민, “부실대출에 대한 형법정책”, 『비교형사법연구』 제9권 제2호, 2007, 267~270면 참조.

36) 이상돈, 『헌법재판과 형법정책』,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5, 135면 참조.

37) 이에 대해 자세하게 양천수, “합리성개념의 분화와 충돌”, 『법과 사회』 31권, 법과사회이론학회, 2006, 230면 참조.

38) 이에 대한 이론적 고찰로 양천수, “법문화와 처분가능성”, 『중앙법학』 제8집 제3호, 중앙법학회, 2006, 442면 참조.

39)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역기능이라고 한다면, 기업의 입장에서 위법행위가 사건화되었을 때 궁극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될 수 있는 증거를 생산하는 결과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경숙, “증권회사의 준법감시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9면 참조.

40) 범규범과 사회규범 사이의 날카로운 경계가 사라지고 모든 종류의 규범을 설정하는 행위자들이 법정립의 절차에 참여하는 행위자로 자리매김 된다. 그러면 법은 서로 다양한 사회적 행위자들이 일정한 규범에 대해 합의해 가는 절차가 실제로 기능하는 한에서만 정립될 수 있다. 이런 법다원주의 통찰에서보면 세계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한 국가 안에서도 법개념의 통일성은 소멸하고 아울러 평등과 같은 범원칙도 희석된다. 자세하게 이상돈, “헌법재판과 형법정책”, 『형사정책연구』 제15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163면 참조.

### 3.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기본요소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개인적인 업무나 방식, 과제를 테마로 하는 것이 아니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어디까지나 조직적 대응으로, 합리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방책이다. 여기에는 전략적인 사고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조직적이고 구조적으로 짜여질 필요가 있다. 경영자는 스스로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중시하는 경영자세를 보이고 이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경영자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솔선하여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못하다. 이러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이념은 이를 구체화하여 조직의 말단 종업원에게까지 침투시킬 필요가 있다.<sup>41)</sup> 궁극적으로는 조직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임하는 것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필수요건이다.<sup>42)</sup>

성공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다음 7가지 공통요소가 갖추어져야 한다. ① 최고경영자의 컴플라이언스 의지 선언, ② 준법지원인(compliance officer)의 임명, ③ 컴플라이언스편람(manual)의 제작 및 배포, ④ 임직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용, ⑤ 모니터링제도의 구축, ⑥ 관련 법규 위반직원에 대한 제재, ⑦ 문서관리체계의 구축이다.

#### 1) 최고 경영자의 컴플라이언스 의지 선언

최고경영자의 컴플라이언스 의지 표명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핵심적 요소이다.<sup>43)</sup> 최고 경영자는 법령의 준수가 기업경영에서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며, 모든 종업원들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 그 방법은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는데, 컴플라이언스선포식을 통해 컴플라이언스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방법이나, 사내 이메일을 통해 모든 종업원에게 최고경영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 사내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최고경영자가 컴플라이언스 메시지를 표명하는 방법, 임직원이 최고경영자의 서면 컴플라이언스 메시지를 읽어보도록 하고, 서명하게

41) 이는 추상화된 범규범의 내면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정민, “회사형법의 합리화와 형법정책의 방향”,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227면 참조.

42) 浜辺陽一郎, 앞의 책, 20~22면 참조.

43) 経営法友會マニュアル等作成委員会, 『コンプライアンス・プログラム作成マニュアル』, 商事法務, 2002, 72면 참조.

하는 방법 등이 있다.

## 2) 준법지원인(Compliance Officer)의 임명

준법지원인은 준법감시인,<sup>44)</sup> 자율준수관리인 등으로 지칭되는 자로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의 핵심 축으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회사 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자이다. 내부통제 기준의 문제점이나 미비사항에 대해 시정을 건의하고, 중대한 위법, 부당행위 발견시 감사에게 임직원에게 대한 제재에 관하여 의견을 표명한다. 이러한 준법지원인이 자율준수에 대해 책임지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고위관리직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전개되고 있다. 확실한 권한을 위해 이사회를 통해 선임과 해임이 결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결정사항은 서면, 전자문서,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을 통해 전직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이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의무규정화하고 있지만, 상법상 의무화할지에 대하여 입법논의가 진행 중이다.<sup>45)</sup>

## 3) 자율준수편람(manual)의 제작 및 배포

업무시 참고할 수 있는 지침서로 준수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 모든 사람들이 업무 중 참고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자율준수편람은 법률중심보다는 실무 및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하여, 해도 좋은 것(DO)과 해서는 안 되는 것(DO NOT)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한편 회사 사업 내용의 변화, 법규정의 개정 및 판례의 변화 등에 맞춰 편람을 정기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애매모호한 사항(grey area)은 법무팀 등 일정부서의 확인 과정을 거친 후 시행하도록 절차를 제도화할 필요도 있다. 준수사항과 함께 간단한 질문을 통해 임직원들의 이해도를 테스트하는 방식도 바람직하다.

44) 이미 2000년 은행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상호신용금고법, 증권거래법, 증권투자회사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선물거래법, 보험업법 등에서는 준법감시인이 제도화되었고, 2009년 시행하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조 4항)에도 준법감시인은 강제적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45) 성희환, “상장법인에 대한 내부통제와 준법지원인 제도의 도입타당성 검토”, 준법지원인제도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발표문, 2009.6.2. 참조; 이준행, “증권·선물회사 준법감시인의 기능 및 역할 제고방안,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준법감시인 역할 제고방안”, 증권선물거래소, 2009.1.21. 발표문 참조.

#### 4) 임직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용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교육을 통하여 널리 전파될 수 있다.<sup>46)</sup> 교육은 업무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교육은 일률적이 아닌, 부서 및 직책을 고려하여 차등화하여야 한다. 특히 제재수준 감경을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임직원들이 담당분야에서 어떤 행위가 어떤 법규에 저촉되는 것인지를 구체적 예시를 통해 알 수 있도록 하고, 사내에 자율준수 풍토가 정착되도록 체계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즉 매뉴얼 배포만으로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잘 되고 있다고 하기에는 부족하며, 교육을 통해<sup>47)</sup> 부주의하게 관련법규를 위반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교육방법은 사전에 법규 위반가능성이 높은 부서와 직책(danger zone)을 파악하여 수요에 따라 교육을 차등화하여야 한다. 반드시 내부 교육만을 실시할 필요는 없으며, 협회나 업종별 사업자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 세미나, 간담회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교육형태로는 특정장소에서의 집단식 강의뿐만 아니라 온라인, 홈페이지 등<sup>48)</sup>을 통한 교육도 이용할 수 있다.<sup>49)</sup>

#### 5) 모니터링(monitoring)제도의 구축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핵심은 범위반 행위의 예방과 지속적인 감시에 있다.<sup>50)</sup> 이를 위해 감사(audit), 심사(supervision), 보고(reporting) 등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내부감독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임직원이 계약체결, 판촉활동 등 업무성격상 관련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준법지원인과 사전에 협의<sup>51)</sup>토록 함으로써 범위반행위의 발생을 원천적

46) 참고로 컴플라이언스 교육일람표에 대해 자세하게 經營法友會マニュアル等作成委員會, 앞의 책, 86면 참조.

47) 그런데 최근에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확대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교육프로그램 실시를 권장사항으로 변경하였다. 이는 중소기업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며, 이로써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경비의 65%를 경감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48) 링크나 업데이트 방법에 대한 예시로 經營法友會マニュアル等作成委員會, 앞의 책, 100~108면 참조.

49) 실제 국내 많은 금융기관들은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그 예로 박성수, 앞의 논문, 14면 참조.

50) Anne M. Marchetti, *Ibid.*, 9면, 63~65면 참조.

으로 제거하는 예방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법적 리스크가 높은 영역은 특별 관리해야 한다.<sup>52)</sup> 즉 잠재적 위반가능성을 발견한 경우 준법지원인에게 보고할 수 있는 핫라인채널을 마련하고, 이 경우 신분상 보복위험이 없도록 내부고발자 보호시스템<sup>53)</sup>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 6) 관련법규 위반직원에 대한 제재

관련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마련 및 운용을 말한다. 위반정도에 비례하여 인사상 제재를 포함한 기타 불이익 조치를 부과하여야 한다. 이는 범위반행위를 기업 스스로 용인하지 않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범위반자가 적절한 제재를 받지 않고 묵인되는 경우 법질서 자율준수 문화가 정착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반자에 대한 제재시스템을 갖추어 위반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

#### 7) 문서관리체계의 구축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관련 문서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정확한 최신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관한 체계적인 문서의 작성과 보관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기업내에서 정착되기 위한 필수 인프라이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모범적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경쟁당국으로부터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문서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운영상황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이 가능하다.

주요 관리대상 문서로는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의지 선언문과 이에 대한 임직원 통보문, 준법지원인의 임명장, 자율준수편람 및 배포사실의 입증서류

51)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자체에 의사소통(communication)이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잡게 된다. Anne M. Marchetti, *Sarbanes-Oxley Ongoing Compliance Guide: Key Processes and Summary Checklists*, Wiley, 2007, 3면 참조.

52) Anne M. Marchetti, *Sarbanes-Oxley Ongoing Compliance Guide: Key Processes and Summary Checklists*, Wiley, 2007, 19면 참조.

53) 이에 대해 자세하게 Robert Moeller, *Sarbanes-Oxley and the New Internal Auditing Rules*, Wiley, 2004, chapter 4 참조.

등과 함께 내부감시활동 관련 자료, 범위반 책임자에 대한 제재조치 관련자료, 기타 정부에 보고·제출한 자료 등이 있다.<sup>54)</sup>

#### 4.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실행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크게 세 단계로 실행된다. 제1단계는 실행체제의 구축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최고경영자에 의한 자율준수 방침의 천명, 자율준수 관리자의 임명, 적절한 권한과 책임의 부여, 내부통제체제의 구축<sup>55)</sup> 등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제도의 도입을 위해 자율준수의 필요성에 대한 내부의 공감대의 확산과 함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기초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이다.

제2단계는 자율준수의 추진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자율준수편람의 작성, 자율준수 교육의 실시, 자율준수 이행상황의 감사, 범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등을 통하여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단계이다.

제3단계는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문서 관리, 프로그램 운영성과의 평가, 절차 및 제도의 개선, 당국과의 협력 등을 추진하는 단계이다. 즉 2단계의 활동을 지원하고 평가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단계로 평가와 피드백을 통하여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다.

### Ⅲ.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적용

#### 1.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금융사에 대한 효율적인 감독체제의 부재가 지적되었고, 이후 2000년 은행법등 각종 금융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sup>56)</sup> 되면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시초로 내부통제제도가 도입되었

54) Anne M. Marchetti, *Ibid.*, 2면, 65~66면 참조.

55) 내부통제시스템은 협상과정을 거친 규제라고 볼 수 있다. 자세하게 이정민, 앞의 논문, 216~218면 참조.

다. 은행을 비롯하여 증권회사, 보험회사, 투신사 등 금융기관들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준법감시인(지원인)을 선임하였다. 이와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2001년 “공정거래 자율준수규범”을 제정, 선포하였다. 이를 따르는 기업이 2001년도 12업체에 불과했던 것이 2004년 193업체, 2007년도 344업체, 2008년도에는 360업체정도로 증가하였다.

이외에도 금융기관 등은 스스로 정한 준법감시업무규정을 근거로 준법감시부, 준법지원부 등을 운영하고 있다. 내부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모든 직원으로부터 준법서약서 등을 제출받고 있다. 은행에서는 자점검사제도를 활용하여, 독립적으로 전날의 업무를 체크하는데 대개 타은행의 전직 직원들이 객관성을 보장하면서 독립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다.<sup>57)</sup>

## 2. 미국

미국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 즉 기업의 명성, 벌금 등 형사처벌, 과징금·영업정지 등 행정상 제재를 피하기 위해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다.<sup>58)</sup> 이 자발적 참여의 원동력은 미국 연방 양형기준(The Federal Sentencing Guideline)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연방 양형기준은 회사 안의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없다면, 즉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무시하였다면 엄벌에 처하고,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구축되어 있고, 효과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면 형사책임의 최고 95%까지 감면해 준다.<sup>59)</sup>

한편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대하여 연방 양형위원회는 2004년 4월 30일 기존의 법준수 외에 윤리강령(ethical conduct)을 추가하였다. 이는 사베인스 옥슬리법(Sarbanes-Oxley Act)<sup>60)</sup>를 반영한 것으로, §8B2.1. 가이

56) 은행법 제23조의 3, (구) 증권거래법 제54조의 4,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7조, (구)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 제5조의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 6, 신용협동조합법 제76조의 3, 농업협동조합법 제125조의 4, 보험업법 제17조,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 3, 새마을금고법 제52조의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조.

57) 자세한 우리나라 적용사례는 이정민·신의기, 앞의 책, 72~90면 참조.

58) 2009년 3월2일 정진수, “범무담당관제도 및 준법감시인제도 도입방안”, 범무담당관·준법감시인제도 도입 및 활성화에 관한 심포지엄, 21면 참조.

59) 성희황, 앞의 논문, 17면 참조.

드라인 수정안으로 결실을 맺었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위법행위를 감지하고 예방하는 기준과 절차 마련해야 한다.<sup>61)</sup> ② 기업의 최고경영자는 컴플라이언스와 윤리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에 대하여 정통해야 하고, 프로그램의 실행과 실효성과 관련하여 효과적인 감독을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고위 임원들은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과 윤리프로그램을 보장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러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개인에게 적절한 권한 등이 주어져야 한다. ③ 기업은 불법적인 행동을 할 개연성이 높은 개인이 실질적인 임원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④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종업원과 임원이 함께 논의하는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구성되어야 한다. ⑤ 감시, 감사, 평가, 프로그램의 홍보도 합리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⑥ 조직 전체를 통해 프로그램을 발전 강화시켜 나아가야 한다. ⑦ 불법행위가 감시된 후 합리적(적절한) 절차를 거쳐 유사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sup>62)</sup>

이때에도 양형가이드라인은 기업의 관련자에 대한 제재레벨, 기업규모, 범죄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두 요소로서, 첫째 기업이 “효과적으로 범죄를 방지하고 탐지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지,” 둘째 기업이 “책임을 받아들이고 자기보고”를 하고 있는지를 들고 있다.<sup>63)</sup> 이 두 가지 요소는 종종 과소평가되고 있는데, 자기 책임을 인정하고,

---

60) 사베인스 옥슬리 적용 대상기업은 연차보고서(Section 404)에 내부통제에 관한 보고서(internal control report)를 포함시켜야 하고, CEO/CFO인증서에도 내부통제시스템의 설치와 기능평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Anne M. Marchetti, *Ibid.*, 25~26면 참조.

61) 위법행위를 감지할 때는 규모와 산업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질적 접근을 하라고 한다. Anne M. Marchetti, *Ibid.*, 23면 참조.

62) United State Sentencing Commission Guideline Manual <http://www.uscc.gov/2004guid/CHAP8.htm>

63)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1) 회사는 법원에 법 위반을 방지하고 탐지하는 내부통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출해야 한다. 이때 이행을 위한 스케줄도 포함되어야 한다. (2) 법 위반을 방지하고 탐지하는 내부통제 프로그램이 법원에 의해 채택된다면, 회사는 그 위법행위와 그 법 위반을 방지하고 탐지하는 프로그램을 주주와 종업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3) 회사는 정기적으로 법 위반을 탐지하고 방지하는 프로그램이 잘 적용되는지 그 진행 상황에 관한 리포트를 법원이나 probation officer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리포트들은 회사에 대한 기소(형사소송), 민사소송, 행정소송에 관하여 보고되어야 한다. 또는 정부에 의한 수사나 공식적인 조사도 보고되어야 한다. 이것은 그 전의 보고서 제출 이후

자기보고의 형태로 즉각적인 협조에 임하면, 벌금 레벨이 감소되며 기소 여부도 이에 의해 결정된다.

연방 법무부의 “기업기소지침” 소위 톰슨메모(Thomson Memorandum)<sup>64)</sup>에 따르면, 기업에 대한 기소여부는 ① 기업이 위반행위를 신속하고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검찰의 조사에 가까이 협조하는지 여부와 ②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존재와 그 효과, ③ 기업의 개선조치, 즉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신규도입이나 기존 프로그램 개선여부, ④ 책임 있는 경영진의 교체나 ⑤ 위반행위자에 대한 제재 수위 등을 통해 결정된다.

아더 앤더스(Arthur Andersen)의 경우 기소되었지만, 메리린치(Merrill Lynch)의 경우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덕택으로 기소되지 않았다. 이와 비슷한 케이스로 헬스 사우스(HealthSouth)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사실 명확히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미국 검찰은 헬스사우스는 빠르고 완벽한 협조로 인해 기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sup>65)</sup>

텔라웨어 Chancery court는 회사안의 직원과 디렉터가 가이드라인을 따랐는지를 보았다. 위임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요건은 SEC, 뉴욕거래소, 재무부 등 중요 연방 재정 요건과 일치하는지 었다.<sup>66)</sup>

이외에도 민사적 제재에 대한 책임감면 근거로 컴플라이언스가 사용된 대표적 사례가 있다. 1996년 텔라웨어 법원의 케어마크(caremark) 케이스<sup>67)</sup>인데, 의료서비스 회사인 케어마크사의 일부 직원이 병원과 의사에게 불법적인 커미션을 제공했다가 2억 5천만 달러라는 거액의 벌금 등을 물게 되자, 주주들이 컴플라이언스 오피서 등 이사의 감시의무소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회사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잘 운용하여 왔다는 것이 입증되면 이사의 감시의무가 제대로 수행되었다고 보

---

알게 된 모든 것이다. (4) 회사가 법 위반을 방지하고 탐지하는 프로그램을 따르고 있는 지를 모니터 하기 위해서는 (a) 법원에 의해 고용된 전문가 또는 probation officer는 미리 알려지지 않은 회계장부나 기록을 제출시킨다. (b) 회사 안에서 알려질 수 있는 개인에 대한 조사도 제출되어야 한다. L. Orland,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Regulation and Compliance*, Aspen publisher, 2004, 2장(2.02) 참조.

64) [http://www.justice.gov/dag/cftf/corporate\\_guidelines.htm](http://www.justice.gov/dag/cftf/corporate_guidelines.htm)

65) L. Orland, *Ibid.*, §7.11. 참조.

66) L. Orland, *Ibid.*, 14장 참조.

67) In re Caremark International Inc. Derivative Litigation, 698 A.2d 959 (Del. Ch. 1996).

았다. 그 판단근거로는 ① 규제사항에 대한 준수정책을 포함한 종업원 행동강령, ② 종업원 행동강령의 검토 및 개정절차, ③ 규제대상 활동을 검토하고 승인할 임원의 지정, ④ 컴플라이언스 오피서, ⑤ 사업과 윤리정책의 준수를 위한 내부감사 계획의 수립, ⑥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대한 종업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훈련 등을 들고 있다.

### 3. 일본

일본에서 본격적인 컴플라이언스 제도의 출발은 일본 경제 단체연합회의 “신기업행동헌장”<sup>68)</sup>에서 비롯되어, 2006년 신회사법 및 금융상품거래법<sup>69)</sup>의 내부통제시스템 규정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신회사법 제362조 제2항 제6호는 “주식회사 업무의 적정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체제의 정비”를 이사회 전결사항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입법화 된 것이다. 한편 금융상품거래법에서는 “당해 회사가 속한 기업집단 및 당해 회사에 관계된 재무계산에 관한 서류 등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내각부령이 정하는 체제”에 대하여 평가한 ‘내부통제보고서’를 유가증권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제24조의 4의 4 제1항).

한편 이렇게 컴플라이언스 체제의 구축이 사회적으로 요청되면서 이를 게을리 하면 배상책임, 주주대표 소송등의 리스크를 안는 법적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신회사법 이전에도 이러한 변화는 있어 왔는데, 야마토은행(大和銀行) 주주대표 소송사건이 그 예이다.<sup>70)</sup> 이 사건에서 이사의 의무로서 회사종업원이 직무수행에 있어서 법령준수를 하도록 하는 체제를 확립하여야

68)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의 신뢰의 공감을 얻기 위해 사회적 유용한 재화와 서비스를 안정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발, 제공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얻으며, 공정 투명한 자유경쟁을 하고, 주주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폭넓게 하고, 적극적으로 사회공헌한다. 종업원의 여유와 풍족함을 실현하고, 시민사회의 질서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해외에서는 그 문화와 습관을 존중한다. 경영자는 본 현장의 정신이 스스로의 역할임을 인식하고 솔선수범하고 관계자에게 철저히 주지시킨다. 본 현장에 반하는 경우 경영자 스스로가 문제해결하는 자세로 대내외적으로 표명하고 원인규명, 재발방지에 힘쓴다.” 經營法友會マニュアル等作成委員會, 앞의 책, 6면 참조.

69) 금융기관은 그 공공적 성격으로 인해 다른 업계에 비해 선두적으로 컴플라이언스 제도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자세하게 金融機關コンプライアンス研究會, 앞의 책, 참조.

70) 大阪地判 平成 12.9. 20.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못한 이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회사경영에 있어서 리스크 관리 체계를 운영·정비하여야 하는 책임이 이사에 게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이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고베제강(神戸製鋼) 주주대표소송 사건<sup>71)</sup>에서도 최고경영자인 대표이사가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회사 내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음으로써 이사회 내지 대표이사에게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운영의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sup>72)</sup>

이외에도 1997년 운수성이 실시한 불시검사에서 클러치 리콜을 은폐해 허위보고를 하고, 2002년에는 허브 마모 한계치에 대한 허위보고를 한 미쯔비시(三菱)그룹은 업무개선명령을 받았다. 이후 기업행동지침을 개정하고, 사원상담실<sup>73)</sup>을 설치하였다. 품질감사위원회와 기업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업윤리준수최우선선언, 기업윤리문제 검토회 실시와 더불어 종업원대상 기업윤리 침투도 조사, 서약서 제출(전사원)을 행하였다.

일본에서도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양형참작사유로 인정한 경우가 있는데, 마루하(マルハ)관세법위반 사건<sup>74)</sup>과 켄노(全農)치킨부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사건<sup>75)</sup>이 그 예이다.<sup>76)</sup>

71) 神戸地判 平成 14. 4. 5.

72) 이 외에도 민사판례 중 민사판례 중 증권회사가 종업원에 대해서 고객에 대해 행하여야 할 설명에 대해 연수, 지도 등을 각별히 행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당해 종업원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례가 있다, 東京高判 平成14.5.23 참조.

73) 직원들이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는 상담창구에 관해서 자세하게 菅原彰文, “企業におけるコンプライアンスへの取組み”, 『刑法雑誌』 47・2, 2008, 263면 참조.

74) 東京地判, 平成 14.1.16.

75) さいたま地判 平成 14.12.4.

76) 大塚和成・瀧川宣信・藤田和久, 앞의 책, 48면.

## IV.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나아가야 할 방향

### 1.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설계의 기본방향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생래적으로 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 이미지 상승은 물론 문제방지에 효과적이며, 경영의 합리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있다. 그리고 실제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예상되는 손해에 비해 비용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으므로 효율성 측면의 메리트도 존재한다.

#### 1)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의무화

이러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장점 때문에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입법화하려는 움직임이 강하다. 즉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미리 범죄를 예방하는 시스템인 만큼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입법화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 이런 이유로 상장법인에 대한 내부통제와 준법지원인제도의 의무화를 법제화하자는 논의가 진행중이다.<sup>77)</sup> 이미 일본의 경우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신회사법에 내부통제제도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기업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갖추는 것과 법으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상법의 개정을 통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내지 그 일부인 내부통제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그 순간 모든 상장법인들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내용이 될 것이고, 각 상장법인은 그를 기준으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sup>78)</sup> 그러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데에는 비용 부담<sup>79)</sup>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러한 비용<sup>80)</sup>부담<sup>81)</sup>을 회사의 규모

77) 2009년 6월 2일, 준법지원인제도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 바 있다.  
 78) 광관훈·김병연·김화진·정준우, 『상장법인의 내부통제제도 법제화 및 KRX의 바람직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 한국증권법학회, 2008.8, 16면 참조.  
 79)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계획이나 구축보다 수정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한다. Anne M. Marchetti, *Ibid.*, 17면 참조.  
 80)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코스트 증대요인으로는 과잉규제, 과잉인원, 관료주의 등을 들 수 있고, 코스트 감소요인으로는 합리적 컨트롤, 적절한 인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와 부문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회사는 그 형식성만을 갖추기<sup>82)</sup>에 급급할 것이고,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명목화, 형식화 되어 타율준수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 2)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인센티브화

이러한 이유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어디까지나 자발성에 그 의의를 두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처럼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설치를 권고할 수는 있어도 의무화하는 조항은 각 회사가 부문별, 규모별, 시기별로 다른 상황에 처할 가능성을 또 다시 배제하여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을 낳게 되고, 기업에게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와 진정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방해가 될 지도 모른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간접적인 방법이 바람직해 보인다. 즉 미국의 경우처럼 강제하지는 않지만, 연방법원의 양형지침서에서처럼 컴플라이언스제도가 존재하면 양형에서 고려해 주는 등의 방법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보인다.

일본에서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잘 시행되는 업체를 중심으로 국가사업 수행시 우선 입찰을 한다거나, 은행에서도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질을 기준으로 하여 거래처를 선별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한다.

이외에도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 불가피하게 혹은 임직원의 실수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한 경우, 과징금 등 제재수준을 경감시켜주고 있다. 먼저 1단계 운용

리더쉽 등을 들 수 있다. 浜辺陽一郎, 『図解コンプライアンス経営』, 東洋經濟新報社, 2006, 112~116면 참조.

81) 이러한 비용부담 때문에 모든 절차가 형식상 완벽히 문서화되고 정립되었다면, 비용절감 측면에서 아웃소싱하는 방법도 고려된다. 이는 절차적 투명성을 보증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Anne M. Marchetti, *Ibid.*, 27~28면 참조.

82) 이러한 예로 일본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형태만 정비하고 의식이 정립되지 않은 경우 문제가 커질 수 있다. UFJ은행은 검사 기피 등으로 인해 은행법 제26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2004년 6월 18일 내부통제 개선이 명하여졌으나, 그 행위의 악질성으로 인해 10월 7일에 도쿄지방검찰청에 고발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은행법 제27조에 의해 행정처분이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UFJ의 은행의 기자회견에서 검사기피를 낳은 기업풍토에 대한 질문에 대해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의식이 희박했다고 답하였다. 白石賢, 『企業犯罪・不祥事の法政策—刑事處罰から行政處分・社内處分へ』, 成文堂, 2007, 261면 참조.

으로, 7개 핵심요소의 시행,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용 상황의 공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실질적 작동시에는 과징금을 20%까지 감경해 주고, 신문 공표시 공표크기, 기간 매체수를 1단계 하향조정하며, 검찰고발 면제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2단계 운용으로서, 1단계 요건을 충족하고, 당해 위법행위의 자진시정, 위반책임자의 제재조치 시행을 하는 경우에는 혜택을 더 높여 과징금은 40%까지 감경하고, 신문공표의 면제, 검찰고발의 면제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컴플라이언스 담당자가 위반행위에 개입한 경우나 위반행위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도입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 고의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는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러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08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고시를 제정하였다. 고시의 이름은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이다. 이 고시는 특히 과징금 감경 등 혜택만을 노리고 컴플라이언스를 도입하는 기업과 컴플라이언스 도입 후 법 준수노력을 소홀히 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종전 제도는 범위반 행위를 하더라도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하기만 하면 15% 이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평가등급이 BB등급 이상의 경우 등급에 따라 5~15% 추가로 과징금을 감경해 주었기 때문에 혜택만을 노리고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사업자가 있었다. 그러나 고시를 통해 A등급 이상의 경우에만 과징금을 10~20% 감경(A: 10%이내, AA: 15% 이내, AAA: 20% 이내)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사후적 유인을 축소한 것이다. 반면 우수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평가등급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면제제도를 대폭 확대하여 기업 스스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사전적 유인을 강화했다. 또 직권조사 면제 적용분야를 종전의 대규모소매점업 고시에서 소비자보호 관련법, 가맹사업법까지 확대하고, 면제기간도 종전의 1년에서 최장 2년까지 연장했다(A : 1년, AA : 1년 6개월, AAA : 2년).<sup>83)</sup>

외국사례와 공정거래법의 인센티브를 고려하여 양벌규정의 기소단계와 양형단계에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컴플라

83) 2008년 10월 24일 과징금부과 고시, 공표지침 등에 산재되어 있던 컴플라이언스 유인 규정을 통합·정비하여 알기 쉽게 정비하여 발효하였다.

이언스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처벌의 경감에 대해 반대하는 견해<sup>84)</sup>도 있을 수 있으며, 제도 도입이 규정으로 강제화되지 않더라도 기업에게 도입여부가 외부의 투명성 판단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등 하나의 압박이나 규제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이러한 것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진정한 취지일 것이다.

## 2.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평가시스템의 확립

위에서 언급했듯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설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즉 설치하여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sup>85)</sup>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계속 평가되어야 하고, 이러한 평가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정착에 중요한 요소로 작동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평가방식으로는 첫째, 우수기업을 매년 선정하여 포상하는 방식(포상제), 둘째,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방식(인증제), 셋째, 운용성과를 객관적 지표로 평가하여 등급을 매기는 방식(등급제) 등을 생각할 수가 있다.

포상제의 경우 모범기업 및 사례(Best Practices)를 선발하는 데에서 유용하다. 하지만 그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선발된 기업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집중보다는 기업홍보에 더 주력함으로써 효과가 단속적이고 따라서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인증제는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증을 받은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용성과가 그 후에 부실해지거나 법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인증 자체에 대한 공신력을 잃기가 쉽다. 한번 부여된 인증은 철회하기가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이에 반해 등급제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용기업에 대해 정기적일 뿐만 아니라 수시로 그 실태 및 성과를 평가하여 반영할 수 있다는 점, 따라

84) 이형준, “준법지원인제도 관련검토”, 준법지원인제도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토론회, 2009.6.2, 참조.

85) 미국의 경우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존재자체로 형사법 위반에 대한 기소를 막을 수 없다. 자세하게 이정민, “부실대출에 대한 형법정책”, 『비교형사법연구』 제9권 제2호, 2007, 268면 참조; L. Orland, *Ibid.*, 6~19면 참조.

서 당해 기업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실질적 운용에 집중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점, 경쟁당국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있어 객관적인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이점이 있다. 다만 등급부여를 위한 객관적인 평가지표의 개발, 평가할 수 있는 관련 전문가의 확보 등이 전제되어야만 성공한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기구는 자율준수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민간이 중심이 된 기구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간주도의 독립적인 평가기구의 구성이 필수적이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평가센터는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각 산업별로 정기 및 수시평가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부에서는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특히 초기단계부터 지원하면, 피평가기업이 큰 부담 없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평가받게 되고, 결국 상시평가제도의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용기업에 대한 상시평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평가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용실태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평가방법 및 지표 개발이 급선무이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핵심 구성요소 외에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기업경영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 자율준수 풍토가 조성되고 있는지 등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해야 하는 것이다.

평가기준의 산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가 있다. 즉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운용성과뿐 아니라, 향후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제도의 발전에 도움이 될 신뢰도와 타당성이 높은 평가지표, 기업계, 경쟁당국, 다양한 이해당사자(Stake-Holders)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지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용기업의 차별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변별력 있는 지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용실태 및 성과를 평가항목별로 계량화할 수 있는 계량적 지표가 존재해야 한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의 성과를 구조적 요소(Structure),<sup>86)</sup>

86) 구조적 요소(Structure)는 최고경영자의 의지천명, 자율준수 방침, 자율준수관리자의 임

운영상 요소(Operation),<sup>87)</sup> 지속적 유지 요소(Maintenance)<sup>88)</sup> 로 나누어 각 차원별로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평가자료의 분석 및 활용을 위해 유용할 것이다.

### 3. 명확성 원칙의 기준으로서 작용하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형법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론적으로는 법적인 정당화(justification) 기능을 함과 동시에, 면책(excuse) 내지 책임조각사유와 같은 기능<sup>89)</sup>을 하기도 하며, 형의 면제, 소추면제 기능을 한다고 볼 수도 있다.<sup>90)</sup> 그렇다면 이러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형법적 고려요소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그 적용영역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형법은 가혹한 형벌을 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예견 가능해야 하고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으로 관철된다. 즉 나중에 형법적으로 어떤 평가가 내려지게 될 것인가에 관해 어느 정도는 알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행위방향설정기능이라고 한다.<sup>91)</sup> 행위방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형법적 제재를 받는 시민은, 그 제재를 자기가 책임져야 마땅할 당연한 몫이라기보다는 우연적이고 채수없는 일로 생각하게 된다. 이와 같은 시민들의 형법의식이 일반화되고 장기화되면 형법의 사회통합적 기능은 무기력해진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은 언제 형사처벌을 받을지 모른다는 불안을 해소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즉 자의성을

명 등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필수요소들을 포함한다.

87) 운영상의 요소(Operation)는 기업경영에 체화된(Built-in)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경쟁법 준수 및 위반관련 시스템 (사전예방 시스템, 조기경보 시스템, 즉각발동 시스템, 피드백 시스템), 자율준수 이슈의 파악, 자율준수를 위한 절차운영, 보고체계, 감시감독 등이 포함된다.

88) 지속적 유지 요소(Maintenance)는 교육과 훈련, 모니터링과 평가, 책임소재 등이다.

89) 이를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서술해 보면, 검사가 구성요건해당사실을 입증하게 되면 피고인인 범인은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게 된다. 배종대·이상돈·정승환, 『신형사소송법』, [54] 거증책임 30 참조, 540면 참조.

90) 자세한 내용은 甲斐克則, 『企業犯罪とコンプライアンスプログラム』, 商事法務, 2007, 112면 참조.

91) 이상돈, 앞의 책, 154면 참조.

배제하는 형법적 사회통제를 통해, 시민사회는 사회적 행동의 안정적 토대(법적안정성)를 마련한다.

그런데 사실 사람마다 명확성이란 개념에 대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의미내용을 동일하게 인식한다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정도면 명확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명확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다. 같은 사람이라도 그 상황에 따라 명확성을 인식하는 정도가 다르기도 하다.<sup>92)</sup>

이러한 이유로 명확성 원칙의 기준이 중요하다. 과거<sup>93)</sup>에는 무과실책임으로 자동적으로 범인이 책임을 지는데<sup>94)</sup> 반하여, 이제 단서조항으로 인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를 입증해야 한다.<sup>95)</sup> 이러한 입법은 90년대 후반 판례의 과실책임설<sup>96)</sup>이나 과실추정설<sup>97)</sup>의 입장과도 맥을 같이 한다.<sup>98)</sup> 그러나 이러한 면책규정은 범인의 형사책임을 과실책임으로 근거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타당하지만,

---

92) 법률언어의 명확성의 의미에 대한 해석으로 이상돈, 『기초법학』, 법문사, 2008, 409~410면 참조.

93) 다행히 1990년대 후반 이후에 나온 양벌규정관련 대법원 판례 가운데는 무과실책임에 근거하여 범인의 처벌을 인정할 예가 없는 것을 볼 때 양벌규정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 진정과실책임설 내지 과실추정설로 굳어져 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박미숙·탁희성·임정호, 앞의 논문, 93면 참조.

94) 도로교통법 제81조의 양벌규정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모든 교통상의 위해를 방지 제거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위반하는 행위자 외에 그 행위자와 위 법 소정의 관계에 있는 고용자 등을 아울러 처벌하는 이른바 질서벌의 성질을 갖는 규정이다. 대법원 1982.9.14 선고, 82도1439.

95) 회사는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구조적 모순(감독체계의 미비, 감독의무의 소홀, 불법행위의 심리적 강제)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박기석, “양벌규정의 문제점과 범인범죄의 새로운 구성”, 『형사정책』 제10호, 1998, 105면 참조.

96) 과실책임설은 다시 과실의제설과 과실추정설, 일반과실책임설로 나누어진다. 김재봉, 앞의 논문, 3-5면 참조.

97) 이 또한 명문의 규정 없이 거증책임을 피고인인 범인에게 전환하는 것이므로, 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박미숙·탁희성·임정호, 앞의 논문, 94~95면 참조.

98) 다행히 1990년대 후반 이후에 나온 양벌규정관련 대법원 판례 가운데는 무과실책임에 근거하여 범인의 처벌을 인정할 예가 없는 것을 볼 때 양벌규정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 진정과실책임설 내지 과실추정설로 굳어져 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박미숙·탁희성·임정호, 앞의 논문, 93면 참조.

입증책임전환이라는 관점에서 헌법상 무죄추정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sup>99)</sup> 그러나 양벌규정에 있어서 입증책임전환은 검사의 입증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내부의 구체적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검사가 입증하는 것보다 기업이 구체적인 해명을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기 때문에 인정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sup>100)</sup>

사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구축하게 되면 잘 지켜져야 하고,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서 법인은 회사 내부의 부정한 사건에 대해서 공시하거나 표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는 모두 남게 된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이렇게 회사가 지켜야 할 책임에 대해 자연스럽게 증거를 남기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공해 준다. 즉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상당한 주의와 감독”에 대한 내용을 명문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기업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통해 법적 리스크의 불확실성에 대해 우려하지 않고, 기업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게 된다.

99) 박미숙·탁희성·임정호, 앞의 논문, 111면 참조.

100) 그러나 행위자의 책임은 검사가 입증하는데 반해, 영업주의 책임은 영업주가 진다면 형평의 원칙이나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은 여전히 가능하다.

## ■ 참고문헌 ■

- 곽관훈·김병연·김화진·정준우, “상장법인의 내부통제제도 법제화 및 KRX의 바람직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 한국증권법학회, 2008.8.
- 김영평·최병선·신도철 편저, 『규제의 역설』, 삼성경제연구소, 2006.
- 김재봉, “양벌규정과 기업처벌의 근거·구조”, 『법학논총』 제24집 제3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 박기석, “양벌규정의 문제점과 법인범죄의 새로운 구성”, 『형사정책』 제10호, 1998.
- \_\_\_\_\_, “판례와 사례분석을 통한 기업범죄 처벌의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학회 춘계학술회의, 2008.5.17. 발표문.
- 박미숙·탁희성·임정호, “양벌규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8년도 대검찰청 용역과제 연구보고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 대한상의, “2007 기업관련 처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조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5차 회의자료.
- 성희활, “상장법인에 대한 내부통제와 준법지원인 제도의 도입타당성 검토”, 준법지원인제도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발표문, 2009.6.2, 참조.
- 양천수, “법인의 범죄능력”,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2호(여름호), 2007.
- \_\_\_\_\_, “형법상 범의개념의 새로운 근거설정 필요성과 가능성”, 『고려법학』 제46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 \_\_\_\_\_, “범 영역에서 바라본 참여자 관점과 관찰자 관점”, 『안암법학』 제23권, 안암법학회, 2006.
- \_\_\_\_\_, “합리성개념의 분화와 충돌”, 『법과 사회』 31권, 법과사회이론학회, 2006.
- \_\_\_\_\_, “범문화와 처분가능성”, 『중앙법학』 제8집 제3호, 중앙법학회, 2006.
- 유병규, 『기업범죄 수사의 효율성 제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 이상돈, 『형법학』, 법문사, 1999.
- \_\_\_\_\_, 『헌법재판과 형법정책』,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5.
- \_\_\_\_\_, 『기초법학』, 법문사, 2008.
- 이정민, “회사형법의 합리화와 형법정책의 방향”,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_\_\_\_\_, “부실대출에 대한 형법정책”, 『비교형사법연구』 제9권 제2호, 2007.
- \_\_\_\_\_, “경영판단원칙과 업무상 배임죄”,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 이정민·신의기, 『법질서 확립을 위한 자율준수 프로그램 활용방안』, 200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 이정숙,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구축-미국 증권회사의 예를 기초로”, 『BFL』 제4호, 2004.3.
- \_\_\_\_\_, “증권회사의 준법감시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이진국, “기업범죄의 예방수단으로서 준법감시제도(Compliance)의 형법적 함의”, 『형사정책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 이형준, “준법지원인제도 관련검토”, 준법지원인제도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토론문, 2009.6.2.
- 정진수, “법무담당관제도 및 준법감시인제도 도입방안”, 법무담당관·준법감시인제도 도입 및 활성화에 관한 심포지엄, 2009.3.2.
- 大塚和成·瀧川宣信·藤田和久, 『内部統制対応版企業コンプライアンス態勢のすべて』, 金融財政事情研究會, 2007.
- 金融機關コンプライアンス研究會, 『金融機關の法令等遵守態勢』, 2008.
- 經營法友會マニュアル等作成委員會, 『コンプライアンス・プログラム作成マニュアル』, 商事法務, 2002.
- 甲斐克則, 『企業犯罪とコンプライアンスプログラム』, 商事法務, 2007.
- 白石賢, 『企業犯罪・不祥事の法政策-刑事處罰から行政處分・社内處分へ』, 成文堂, 2007.
- 菅原彰文, “企業におけるコンプライアンスへの取組み”, 『刑法雜誌』 47·

2, 2008.

浜辺陽一郎, 『コンプライアンスの考え方』, 中央公論新社, 2005.

\_\_\_\_\_, 『図解コンプライアンス経営』, 東洋経済新報社, 2006.

Anne M. Marchetti, *Sarbanes-Oxley Ongoing Compliance Guide: Key Processes and Summary Checklists*, Wiley, 2007.

Anthony Tarantino, *Manager's Guide to Compliance: Sarbanes-Oxley, COSO, ERM, COBIT, IFRS, BASEL II, OMB's A-123, ASX 10, OECD Principles, Turnbull Guidance, Best Practices, and Case Studies*, Wiley, 2005.

L. Orland,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Regulation and Compliance*, Aspen publisher, 2004.

Robert Moeller, *Sarbanes-Oxley and the New Internal Auditing Rules*, Wiley, 2004.

<Abstract>

## A Compliance Program as a Regulation of Corporate Crimes

Lee, Jung-Min

Compliance Programs were created initially in order to comply of laws and to supply the incompleteness of laws. Compliance program created to prevent a breach of the law beforehand and to detect violations in an early stage for correction. The government's regulations apply uniform sanctions despite the diversity of character to be regulated. This nature raises the dilemma of regulations. In order to prevent the dilemma of regulations, laws should admit diversity and be established through communication with participants rather than through commanding and controlling.

Compliance programs were started as guidelines for companies to comply the laws, but they function as a ground for the exchange of perspectives between the government and corporations.

There is a minimum requirement for an effective management of compliance program. The common elements included in the compliance program can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seven items: the CEO's declaration of compliance objective and policy, appointment of the Compliance Officer,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the compliance manual, implementation of compliance education for staff members, an in-house corporate monitoring system, disciplinary measures against competition law violators, and a document management system.

Besides, a compliance program can include various elements for detecting and preventing criminal conducts. The effects of a compliance program include the prevention of over-regulation and regulation failure resulting from inadequate

knowledge.

Discussion on the mandatory introduction of a compliance program is going on actively. The need of a compliance program is undeniable, but the continuous operation of such a program is costly and the uniform application of a compliance program regardless of company size may make the program perfunctory.

Accordingly, compliance programs should be based on voluntariness. It is desirable to provide incentives for the introduction of a compliance program.

The compliance programs supply to set up clear standards for staff members of the corporation.

<Key Words>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기업의 형사책임(Corporate Criminal Liability), 준법지원인(Compliance Officer), 내부통제(Internal Control), 미국 연방 양형기준(The Federal Sentencing Guideline)